

국립광주과학관후원회 회칙

제 정 2015. 07. 05.

1차 개정 2016. 07. 22.

2차 개정 2017. 03. 22.

3차 개정 2018. 11. 21.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회의 명칭은 “국립광주과학관후원회”(이하 “본 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사무소)

본 회의 사무소는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235 국립광주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내에 둔다.

제3조(목적)

본회는 과학문화확산 기반을 조성하고, 학교 밖 과학교육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과학관이 호남권 거점 국립과학관이자 과학 꿈나무를 육성하고 과학문화를 선도하는 명품 과학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한다.

1. 과학관 시설 개선 및 전시콘텐츠의 개발 확충 지원
2. 과학교육 운영 활성화 및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과학교육 지원
3. 특별기획전의 개최 등 과학문화 확산 지원
4. 과학관 직원의 능력개발 지원
5. 후원회 활성화를 위한 ‘후원회의 밤’ 개최 등 후원회 운영
6. 기타 과학관 발전을 위한 사업 지원

제5조(수익사업)

본회는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미리 과학관과 협의한다.

제2장 회원

제6조(회원의 구분)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목적을 적극 지지하고 본회의 사업에 동참할 뜻이 있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 한다. 회원은 특별회원, 일반회원[별표 1]으로 구분한다.

제7조(회원의 가입 및 유지기간)

1. 본회의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가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회원은 후원금을 약정 또는 납입했을 때 회원으로 가입되며, 회원의 유지기간은 [별표 1]과 같다.

제8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본회 운영위원회, 총회 등을 통하여 과학관 운영에 참여하고, 운영위원회가 과학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각종 예우와 혜택(이하 “회원 예우”라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제9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후원금의 약정·납입
2. 회칙 및 제규정 준수
3. 운영위원회, 총회의 의결사항 준수

제10조(후원금)

1. 특별회원과 일반회원에 대한 후원금의 세부사항은 [별표 1]과 같다.
2. 회원은 후원금을 현금 또는 현물의 형태로 납부할 수 있다.

제11조(회원예우의 정지 및 자격상실)

1. 회원이 약정한 후원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해당 의무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회원 예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
2. 회원은 후원금의 미납으로 인한 제1호에 따른 자격상실 이외에 탈퇴 또는 제명에 의하여 그 자격을 상실한다. 그리고 회원은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중대하게 불이행하였거나 본 회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때,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제명된다.
3. 개인회원이 사망하는 경우 배우자 및 직계가족이 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제12조(회원의 상벌)

1. 본 회의 발전에 기여한 회원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2. 본 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9조 2호와 3호의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은 회원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개정 2017. 3. 22.>

제3장 임 원

제13조(임원)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 1명
2. 부 회 장 : 3명 이내 (수석부회장 포함)
3. 운영위원 : 20명 이내 (당연직 운영위원 포함)
4. 감 사 : 2명 이내

제14조(고문, 명예회장 및 자문위원)

1. 본회는 고문, 명예회장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2. 고문, 명예회장 및 자문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회장이 추대한다.

제15조(임원의 선출)

1.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운영위원은 회장이 위촉한다. 단, 과학관 관장은 당연직 운영위원이 된다.
3. 임원은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단,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6조(임원의 임기)

1. 당연직 운영위원을 제외한 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2. 당연직 운영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3. 임원이 임기 중 궐위된 경우에는 보선하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이거나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보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7조(회장의 직무)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제18조(부회장의 구성 및 직무)

1. 회장은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부회장 중 1명을 수석부회장으로 선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수석부회장은 회장이 부재중이거나 유고시에 그 업무를 대행하며, 수석부회장이 유고 시에는 부회장이 업무를 대행한다.

제19조(운영위원의 직무)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회의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제20조(감사의 직무)

1. 감사는 본 회의 재산 및 회계와 운영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 한다.
2. 감사는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회장에게 운영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장 총 회

제21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 회의 특별회원으로 구성되며 회장이 의장이 된다. 단, 회원이 법인(기업체 포함)일 경우에는 그 법인의 대표자가 참석하며, 대표자가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참석할 수 있다.

제22조(총회의 소집)

1. 총회는 특별회원 과반수의 참석(위임장 포함)으로 성원이 된다.<개정 2017. 3. 22.>
2. 정기총회는 세입세출 예·결산 및 사업 승인을 위해 매년 3월과 12월에 2회 개최한다. <개정 2017. 3. 22.>
3. 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 가. 운영위원회에서 총회 소집을 의결했을 때
 - 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총회 소집을 요구하였을 때
 - 다. 운영위원 3분의 1이상이 의제를 명시하여 총회 소집을 요구하였을 때
4.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회칙의 제정과 개정
2.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의 승인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본 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6. 기타 중요한 사항

제24조(총회의 의결 및 의사록 작성)

1. 총회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2. 총회의 의사진행과 회의결과에 관하여는 사무국장이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장이 기명날인한 후 본 회에 비치한다.

제5장 운영위원회

제25조(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며, 회장이 의장이 된다.

제26조(운영위원회의 소집)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하며, 운영위원 과반수 출석(위임장 포함)으로 성원이 된다.<개정 2017. 3. 22.>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을 요구하였을 때
2. 운영위원 3분의 1이상이 소집을 요구하였을 때
3. 감사가 소집을 요구하였을 때

제27조(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의 심의
2. 예산 및 결산의 심의
3. 기본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예우 정지 및 제명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6. 후원금 및 후원금의 모금방법에 관한 사항
7. 기타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제28조(운영위원회의 의결과 의사록 작성)

1. 운영위원회는 재적 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의결사항이나 특별한 사정으로 운영위원회 소집이 곤란할 때에는 서면으로써 의결할 수 있다.

2. 운영위원은 그 의결권을 운영위원회에 참석하는 다른 운영위원 또는 그 운영위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 있다.
3. 운영위원회의 의사진행과 결과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이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장이 기명날인한 후 본 회에 비치하고 차기 운영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확인한다.

제6장 집행기구

제29조(사무국)

1. 본 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에는 업무를 총괄할 사무국장을 두며, 사무국장은 본 회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학관 본부장이 겸임한다.
3. 사무국에는 직원을 둘 수 있다.
4. 사무국장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 가. 사업계획안의 작성
 - 나. 예산안 및 결산서 작성
 - 다. 사업의 집행
 - 라. 재원의 관리 및 집행
 - 마. 각종 회의의 준비 및 진행
 - 바. 후원금의 징수 및 관리
 - 사. 회원 관리
 - 아. 운영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 자. 기타 본 회의 운영 및 사업과 관련된 사항

제7장 재 정

제30조(재원)

본 회의 재원은 후원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31조(재원의 운용과 관리)

1. 본 회의 재원은 과학관의 발전을 위해 제4조에 규정된 사업추진과 본 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한다.

2. 회원이 용도를 지정하여 납부한 금액은 지정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3. 재원의 관리 및 집행은 회장의 승인을 얻어 사무국장이 시행한다.

제32조(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3조(예산)

본 회의 세입세출예산은 매회계년도 개시일 전까지 편성하여 운영위원회 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7. 3. 22.>

제34조(결산)

본 회의는 매회계년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 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5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8장 보 칙

제36조(본 회의 해산)

1. 본 회의 해산은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그 결과를 과학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2. 본 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승인을 얻어 과학관에 기증한다.

제37조(회칙의 개정)

본 회의 회칙 개정은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고, 그 결과를 과학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38조(최초의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특례)

본 회의 창립이후 최초로 수립하는 사업계획과 예산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며, 차기 총회에 보고한다.

부 칙 <2015. 7. 5>

이 회칙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7. 22>

이 회칙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3. 22>

이 회칙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후원자 및 후원기관 혜택 및 예우

구 분	후원금(액)	혜택 및 예우		유지기간
특별회원	1억원 이상 (누적)	· 과학관 시설 무료이용 · 강의실, 홀 등에 후원자 이름 명명(1기업 1개소) * 누적후원금 최고액에 한해 이름 명명 가능 · 아래 모든 혜택		평생
	5천만원 이상 (누적)	· 과학관 시설 무료이용(연중 5일) · 후원기업 직원가족 초청 행사(연1회, 원하는 기업) · 아래 모든 혜택		평생
	1천만원 이상 (누적)	· 과학관 시설 무료이용(연중 3일) · 후원기관 과학관 홈페이지 네이밍 · 아래 모든 혜택		10년
	500만원 이상 (누적)	· 명판에 기부자 이름 및 기관 로고 게재 · 후원회의 밤(연말) 행사 개최 시 초청 · 아래 모든 혜택		5년
	100만원 이상 (누적)	· 명예의 전당 및 홈페이지에 네이밍 · 후원회의 밤(연말) 행사 개최 시 초청 · 과학관 무료입장(3년)		3년
일반회원	50만원 이상 (누적)	· 과학관 주요행사 초청 · 과학관 무료입장(1년)		1년
	30만원 이상 (누적)	· 무료입장권 4인 가족권 10매 제공	100,000	1년
		· 주차료 무료 10회 제공	20,000	
		· 특별기획전 4인 가족권 5매 제공	200,000	
		소 계	320,000	
	10만원 이상 (누적)	· 무료입장권 4인 가족권 10매 제공	100,000	1년
		· 주차비 무료 10회 제공	20,000	
		소 계	120,000	

[붙임2]

국립광주과학관후원회 회원 명단(누적)

번호	구분	회원명(구분)	소속·대표자	비고
1	회장	김홍균(기업)	남선산업(주) 회장	
2	수석부회장	김보곤(기업)	(주)디케이 회장	
3	부회장	최 석(기업)	(주)유태엔지니어링 회장	
4	고문	최상준(개인)	남화토건(주) 대표이사	
5	감사	허 정(기업)	에덴병원 원장	
6	운영위원 (7)	이정구(당연직)	국립광주과학관 관장	
7		강신기(개인)	전) 광주광역시 기획조정실장	
8		박성수(개인)	광주전남지역혁신플랫폼 센터장	
9		양한모(기업)	학교법인 '학교의숙' 이사장	
10		최영준(개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이사장	
11		강신영(개인)	전) 국립광주과학관장	
12		김선아(개인)	전) 국립광주과학관장	
13	개인회원 (20)	박영숙(개인, 정기)	전) 광주자연과학고 교장	
14		용홍택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15		한종수	전) 전남나노바이오연구센터장	
16		구수정	개인	
17		고화석(정기)	나눔미테크(주) 부장	
18		최유경(정기)	전) 김춘국수	
19		지연숙	개인	
20		이성준	개인	
21		박태우	개인	
22		오영미	오영미 신경과의원	
23		문경주	국립광주과학관	
24		김선자	국립광주과학관	일반
25		주유라	국립광주과학관	일반
26		신경은	국립광주과학관	일반
27		윤원찬	국립광주과학관	일반
28		전태호	국립광주과학관	
29		나종원	국립광주과학관	
30		나성호	전남중학교	
31		나연재	전남중학교	
32		박영진	국립광주과학관	일반

번호	구분	회원명(구분)	소속·대표자	비고
33	기업회원 (17)	화천기공(주)	권영두 사장	
34		세무법인 무등	정호경 대표	
35		광주은행	고병일 행장	
36		국민은행첨단지점	국민은행 첨단지점장	
37		(주)모아종합건설	박치영 회장	
38		오메개.N.C	고기석 대표	
39		넓으실(정기)	박경순 대표	
40		(주)우성정공	박화석 회장	
41		(주)미스터스트럭처	김장윤 대표	
42		광주상공회의소	정창선 회장	
43		(주)유아이테크	김현국, 박세환 공동대표	
44		하나은행	하나은행 상무지점장	
45		에스엔아이	윤재일 대표	
46		정원시스템(주)	안진웅 대표	
47		(주)경진개발	오승희 대표	
48		(주)오패스닷컴	이민기 대표	
49		팜파스(주)	진용출 회장	